

의안번호	제 104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이 숙 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11월 21일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8년 11월 21일

발 의 자: 이숙애, 김영주, 서동학, 임기중,
이의영, 황규철, 박성원

1. 제안이유

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제7조의3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
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취업
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적용범위(안 제2조)

나.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)

다. 취업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4조)

라. 취업지원센터의 조직(안 제5조)

마. 취업지원센터의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 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: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8-57호

2018. 11. 1. ~ 2018. 11. 21.(20일간, 특이의견 없음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
2. 특성화고등학교

제3조(취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」(이하 “취업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.

제4조(취업지원센터의 기능)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
2.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
3.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
4.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

5.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

6.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취업지원센터의 조직)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 장학관이 겸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, 산학협동 지원, 노동인권교육 지원, 취업정보 서비스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(교육전문직원, 교사, 행정직원 등)을 배치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,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취업지원센터의 지원)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**직업교육훈련촉진법**[시행 2018.9.28.] [법률 제15525호, 2018.3.27., 일부개정]
제7조의 3(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)

-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·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**고용정책 기본법** [시행 2018. 9. 21.] [법률 제15522호, 2018. 3. 20., 타법개정]
제24조(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) 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과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·조언하고,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,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비용 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관련: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7조의3(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)
-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활성화,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필요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인건비(행정직원 2명, 교육전문직 1명), 취업지원센터 운영비

3. 관련조문

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5조(센터의 조직)

- 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(교육전문직원, 교사, 행정직원 등)을 배치할 수 있다.
-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,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센터의 지원)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인건비: 2018.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건비 단가 적용

※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인건비 인상분(보수인상분 및 호봉승급분을 포함 5.33%)

- 운영비: 2018.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비 적용

※ 연도별 물가상승률 3% 반영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연간 인건비 추계		연도별 인건비 추계					
산출기초	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
1. 인건비	217,253	217,253	228,833	241,030	253,877	267,408	1,208,401
가. 행정직원 60,568,940원×2명=	121,137	121,137	127,594	134,395	141,558	149,103	673,787
나. 교육전문직원 96,116,304원×1명=	96,116	96,116	101,239	106,635	112,319	118,305	534,614
2. 운영비	160,000	160,000	164,800	169,744	174,836	180,081	849,461
가. 센터 운영비 160,000,000원×1년=	160,000	160,000	164,800	169,744	174,836	180,081	849,461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, 특별교부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	
세 입	377,253	393,633	410,774	428,713	447,489	2,057,862	
보통교부금	277,253	293,633	310,774	328,713	347,489	1,557,862	
특별교부금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	
세 출	377,253	393,633	410,774	428,713	447,489	2,057,862	
인건비	217,253	228,833	241,030	253,877	267,408	1,208,401	
운영비	160,000	164,800	169,744	174,836	180,081	849,461	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국고보조금						
	보통교부금	277,253	293,633	310,774	328,713	347,489	1,557,862
	특별교부금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자체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